

2026년도 신규 개원

시립대야e음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

2026년 신규 개원 **시립대야e음어린이집**(경기 시흥시 복지로120번길 4,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@)의 원아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1. 시설현황

시 설 명	모집 인원	소 재 지	행정동	개원예정일	연락처(원장)
시 립 대 야 e 음 어 린 이 집	65	시흥시 복지로120번길 4 (e편한세상 시흥더블스퀘어)	대야동	2026.9.1.	010-8172-0779

※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자 자녀 70% 우선 선발, 그 외 범위(30%)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.

※ 어린이집 정원 및 개원일자는 어린이집 공사 일정, 어린이집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. 연령별 모집인원

가. 시립대야e음어린이집(시흥시 복지로120번길 4,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 관리동)

연번	반구분	보육대상 아동(출생일 기준)	반개수(장애통합)	모집(명)	비고
	계		8	65	
1	만0세반	‘25.01.01.이후 출생	2	6	
2	만1세반	‘24.01.01. ~ ‘24.12.31.	2	10	
3	만2세반	‘23.01.01. ~ ‘23.12.31.	2	14	
4	만3세반	‘22.01.01. ~ ‘22.12.31.	1	15	장애통합 포함
5	만4세반	‘21.01.01. ~ ‘21.12.31.	1	20	장애통합 포함
6	만5세반	‘20.01.01. ~ ‘20.12.31.			

※ 반별 모집인원 및 반 편성은 입소대기 현황 및 어린이집 사정 등에 의해 변경(조정)될 수 있으며, 혼합반 편성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

※ 연령별 정원 기준 : 만0세(3명), 만1세(5명), 만2세(7명), 만3세(15명), 만4~5세(20명)

3. 입소대기신청 및 입소통보

가. 입소대기 신청기간 : 2026. 7. 6.(월) 10:00 ~ 2026. 7. 17.(금) 24:00

○ 유의사항

※ 2026. 7. 6.(월) 10:00 이전 입소신청은 적용되지 않음(제외 대상)

※ 신규 입소원아 모집 선발 기준일은 2026. 7. 17.(금) 24:00까지이며,
이후 신청 건은 결원 발생분부터 적용됨

※ 입소 선정 기준(비율) : 공동주택 거주자 70%, 그 외 일반적 입소순위(거주자, 비거주자) 30%

나. 신청방법 :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(<http://www.childcare.go.kr>)에서 ‘등록대기’ 신청

○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접속 → (아동등록) → 어린이집 검색 → 등록대기 신청

※ 신청 시 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요 / 홈페이지 등록대기 신청방법 헬프데스크 문의

○ 공동주택 우선입소신청자 : ☒ “무상임대어린이집(시립대야e음어린이집)이
위치한 단지 내에 거주중인 영유아” 체크 필수

※ 우선입소자가 체크하지 않을 경우, 공동주택 거주자 70% 우선 선발 불가

○ 입소예정 희망월은 입소대기 신청하는 월에 해당하는 2026년 7월로 체크

다. 예비입소통보 : 2026. 7. 20.(월) ~ 7. 24.(금) (개별통보)

라. 증빙서류제출 : 2026. 7. 28.(화) ~ 7. 30.(목) (3일 간)

※ 서류접수는 평일 10:00 ~ 17:00 내에 어린이집 직접 방문제출(우편·인터넷·택배 등 불가)

마. 입소확정통보 : 2026. 8. 4.(화) (개별통보)

바. 개원예정 : 2026. 9. 1.(화)-

※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입소일 변경 시 별도 안내

※ 상기 일정은 어린이집 사정으로 변동 가능

4. 입소우선순위 및 증빙서류 제출

가. 원아 모집 시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4,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적용

나. 입소결정방법

입소 결정 방법	○ 동일 입소신청자가 1,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,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 작성 - 1순위 항목 당 100점(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,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), 2순위 항목 당 50점으로 산정 - 다만,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-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○ 점수합산 결과 동점자가 연령별 반 정원보다 많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(선착)순으로 결정
----------------	--

※ 기타 세부사항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

다. 입소우선순위

순 위	자 격
1순위	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※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•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•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*의 영유아 ※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※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(제3호), 순직자(제5호·제14호·제16호), 상이자(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·제17호)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*의 자녀 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사람 •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※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.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(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) •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• 제1형 당뇨병을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•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•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2 제3호나목2)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•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2 제3호나목2)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
2순위	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 가족 또는 조손가족 •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※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•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(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)인 아동의 형제·자매 ※ 단, 재원아동 형제·자매의 경우,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

「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」 적용원칙

-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모 모두가 모두 일(취업)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
 - 취업의 기준 : 월 60시간 이상 근로
 - 취업의 증명 :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(자영업자 포함)
 -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
 - 휴직자*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
*다만, 육아휴직자의 경우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.
 -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
- 취업준비자
 - 직업교육훈련(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)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,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(서류상 확인)
 - 단, 출석 수업에 한함.
 -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. 다만,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(서류상 확인)
- 자영업자
 - 자영업자*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**이 가능해야 함
*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 불가 / **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
 -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
 -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. 다만, 농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
- 예술인
 -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(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)
※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
- 대학(원)생
 -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 대학 등) 불인정
-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라. 증빙서류제출

- 대 상 자 : 부여된 입소대기번호 순(예비입소자)으로 개별연락 예정
- 제 출 처 : **시립대야음어린이집**
- 제출기한 : **2026. 7. 28.(화) ~ 7. 30.(목)**
 - ※ 서류접수는 평일 10:00 ~ 17:00 내에 어린이집 직접 방문제출(우편·인터넷·택배 등 불가)
- 제출서류 : ① 입소우선순위 자격증빙서류
 - ② 주민등록등본(공동주택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 확인용)
 - ③ 기타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
- ※ 전입 전 세대는 입주자 계약서 우선제출 후, 실제 입소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
(전입신고 기준일 : 2026. 9. 30. 이전까지 완료)
- ※ 입소 결정 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시 입소 가능
(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자격증빙서류 참고)
- ※ 어린이집 원장은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음

5. 유의사항

- 가. 입소대기신청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하며,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적용이 취소됩니다.
- 나. 서류제출 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전화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.
- 다. 입소자 결정은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환산점수로 결정되며, 반 정원보다 동점인 우선 순위자가 많은 경우 ‘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’ 입소대기 신청(선착) 순으로 결정됩니다.
- 라.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(시흥시 복지로 120번길 4) 단지 내 거주자 자녀의 경우, 어린이집 보육 총 정원의 70% 범위에서 우선 선발합니다.
- 마. 입소가 확정된 영유아의 학부모님들 중 전입신고 예정인 분들은, 실제 어린이집 입소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바. 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」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어린이집 ‘입소일’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증빙서류는 ‘2026년도 보육사업안내(교육부)’에서 정한 서류만 인정합니다.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, 입소대기 신청이 취소되거나 입소확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사. 입소 대기 신청자가 몰려 ‘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’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☎ 문 의

- 입소대기 신청 관련 문의 : 아이사랑헬프데스크 (☎ 1566-3232 > 단축번호 1번)
- 시립대야e음어린이집 : ☎ 010-8172-0779

- [붙임] 1.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자격증빙서류 안내 1부.
2.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리플릿(참고용) 1부. 끝.